〈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10.26

한국밸류 10 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AP622)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주식가격변동위험**,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른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밸류 10 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가치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국내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주로 저평가된 주식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주식 등 지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장기 복리수익을 추구하는 "가치투자 펀드"를 운용방침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2480%	0.70%	1.590%	1.2516%	128	261	399	691	1,5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8980%	0.35%	1.030%	0.9016%	92	189	289	501	1,11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10.27~ 2026.10.26	2024.10.27~ 2026.10.26	2023.10.27~ 2026.10.26	2021.10.27~ 2026.10.26	2014.03.17~ 2026.10.2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21.69	1.94	1.39	-5.08	0.61
비교지수	51.02	52.27	36.99	15.48	9.67
수익률변동성	32.69	26.06	23.09	20.18	17.54

(주1) 비교지수 = [KOSPI200*90%]+[CD금리*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승혁	1976	수석매니저 (책임)	7	4,311	37.05	44.75	34.63	47.07	20년6개월
배성조	1995	책임매니저 (책임)	-	-	-	-	34.63	47.07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vam.koreainvestmen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1)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가입기간	2015.12.31 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최소 10 년 이상 (단, 5 년 이내 해지 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 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해지 전 6 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과표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00 원으로 출발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매손실은 200 원이고 배당수익이 50 원, 이자수익이 50 원일 경우 기준가격은 900 원(1,000-200+50+50)이 되어 100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매손실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는 배당수익(50 원)과 이자수익(50 원)의 합계만큼 추가된 1,100 원(1,000+50+50)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6978.6300 / 인터넷홈페이지: va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0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슈퍼 (S-T)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현재 가입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